



타학과 수강에 관한규칙

규정번호	3-3-8
제정일자	2000.07.01
개정일자	2011.05.13
개정번호	Ver.4 총페이지 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학칙 제34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30조에 의하여 학과 간의 타학과 수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타학과 수강 허용 범위)**
- ① 전문학사과정에서 타학과의 수강 허용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, 최대 18학점(3년제는 30학점) 이내에서 허용한다.
 -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서 타 학과의 수강 허용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, 최대 9학점 이내에서 허용한다.
 -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부(과)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규칙은 재수강신청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포함한다.

- 제3조(타학과 수강신청 방법)**
- ① 타학과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정정은 교학처에서 따로 공고하는 기간에 해야 한다.
 - ② 인원 제한 강좌의 경우 해당 학과 수강신청 결과 수강 잔여 인원이 없을 때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불허한다.
 - ③ 각 학과별로 수강신청 이전에 타학과 수강 불허 강좌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4조(타학과 수강과목의 학점인정) 이 규칙에 의해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. 단, 소속 학과에서 전공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.

제5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